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530
----------	-------

발의연월일 : 2024. 2. 20.

발 의 자 : 김은희 · 황보승희 · 김희곤
권명호 · 백종현 · 김미애
지성호 · 윤한홍 · 박진
윤주경 · 이양수 · 박성중
조정훈 · 임병현 · 노용호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현행법상 특정중대범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재판과정에서 보복 범죄로 목숨을 잃는 등 스토킹으로 시작되어 살인, 강간, 강금 등 중한 범죄로 귀결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스토킹범죄도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여 스토킹과 관련된 강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는 지

적이 있음.

이에 흥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여 스토킹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 11호 신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를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죄”로 한다.

1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의 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 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 10. (생 략) <u><신 설></u> <u>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u> 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제2조(정의) ----- ----- -----. 1. ~ 10. (현행과 같음) <u>1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u> <u>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의</u> <u>죄</u> <u>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죄</u> ----- -----